# 유토피아퓨처 약관

#### 제1주 (목정)

이 계약은 (주) 유토피아퓨처(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 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 에 가입 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 제3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는 납입금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제4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 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른 월 납입금, 납입회수는 상조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구분	상품금액	계약형태	납부방법	납입주기	납입일자
이룸 499	3,205,300원	- 부정기형 -	1~60회(월100원)	월납 -	자동이체 지정일
			61~167회(월29,900원)		
이룸 멤버십	3,355,200원		1~36회(월100원)		
			37~120회(월39,900원)		
이룸 PLUS	6,410,600원		1~60회(월200원)		
			61~167회(월59,800원)		

-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이체를 통하여 월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사의 월 납입금 납부 증빙 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 또는 통장 출금 내역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거래원장 또는 입금확인서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 납입금 납부 증빙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 (잔여 납부금 및 실비 청구)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행사 종료 즉시 잔여 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환 상품은 전환 계약 시 완납)

## 제6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 제7조 (서비스의 이용)

- ①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계약 체결 시 제1항 이외의 자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계약 체결 후 가입 상품 금액보다 많은 상품 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상조서비스 이용 시점의 판매 중인 동일 금액의 상품이나 높은 금액의 상품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④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 제8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 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은 다음과 같다.

도서 지역(단,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 지역은 가능)을 제외한 회원이 지정한 전국의 장례 시설에서 이용할 수있나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회원과 회사가 상호협의하여 근거리 동급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2)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 야 한다.

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 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 (상조서스의 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 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③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원 은 이미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의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 이전이라도 의전 지도사가 출동한 후 회원이 상조 서비스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회원은 상조상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 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 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 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화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 서비스의 상품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계약형태	환급기준	정의
부정기형	<ul> <li>▶ 해약환급금 = 납입금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li> <li>관리비 = 납입금의 5%(총 관리비 상한 50만원)</li> <li>모집수당공제액= 모집수당 x 0.75 + 모집수당 x 0.25 x (기납입선수액)</li> <li>모집수당 = 총 계약대금의 10%(상한 50만원)</li> </ul>	정기형을 제외한 상품

단, 100%(만기 회차) 환급금은 만기 익월 경과 후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공정위 표준 약관을 적용합니다. (중도해지 시는 결합상품 대금을 제외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단, 중도해지 시 결합상품 대금은 제외)

4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 측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방문 시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통장사본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인감증명서

⑥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③ 회사는 회원 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 수준의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회원 명의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양도인·양수인 회원 명의변경 신청서, 신분증

## 제1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 조정 기구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4조 (시행)

이 약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